

예 산 총 칙

제1조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552,332,765	385,138,593
일반회계	5,555,484,201	277,774,000
특별회계	1,996,848,564	107,364,593
공기업특별회계	592,444,945	37,148,593
수도사업특별회계	276,803,247	27,680,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6,286,425	7,088,593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79,355,273	2,380,000
기타특별회계	1,404,403,619	70,216,000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7,995,869	1,399,000
경륜사업특별회계	37,586,050	1,879,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63,263,839	23,163,000
교통사업특별회계	54,762,266	2,738,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3,863,000	1,693,00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606,049,966	30,302,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8,000	-
기반시설특별회계	607,000	30,000
유료도로특별회계	38,003,579	1,900,000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109,440,310	5,472,000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17,386,140	869,000
재정비축진특별회계	15,437,600	771,000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725,268천원으로 한다.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210,365,000천원, 특별회계 180,000,000천원이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